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자 형사소송 참가제도 신설 등〉

-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399호)
- 손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51호)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33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11
1. 피해자 소송참가제도 신설	11
가. 개정안 주요내용	11
나. 현행제도 개관	19
다. 피해자참가제도 해외 입법례	21
라. 개정안 검토	24
2. 피해자등의 권리 확대	26
가. 피해자등의 열람·등사권 확대	26
나. 기타 피해자등 권한 확대	29
3. 성폭력범죄등 피해자보호 확대	33
가. 개정안 주요내용	33
나. 현행제도 개관	35
다. 개정안 검토	36
4. 기소전사실확인 및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	37

가. 개정안 주요내용	37
나. 개정배경	40
다. 개정안 검토	40
5.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 조사	41
가. 개정안 주요내용	41
나. 현행제도 개관	43
다. 개정안 검토	44

I . 제안경위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박은정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8. 26.

다. 회 부 일 : 2025. 8. 27.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손솔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7. 20.

다. 회 부 일 : 2025. 7. 21.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7. 23.

다. 회 부 일 : 2025. 7.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음. 이에 수사와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함. 보완수사권은 그 명칭이 어떠한든 실질적으로 수사권으로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소기관에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권한 집중과 남용의 통로를 여는 것이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부실수사의 방치, 사건처리의 지연, 피해자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아니 되므로,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문서주의, 법정 이행기한, 이행관리 의무, 긴급 보완수사요구, 수사관서 지정 등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사의 비권력적 사실확인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며, 수사권이 사실상 일원화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인권보호관·수사심의위원회 등 중층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장을 새로 만들어 수사 및 공판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공소청에 집중되는 기소권 자체의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고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실효적으로 보완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현행보다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원칙과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법률자문 요청의 근거를 규정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잠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나. 대통령령과 부령 등에 산재하여 있던 수사의 기본원칙, 즉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불구속수사의 원칙, 비례원칙,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 별건수사 및 자백·진술 강요의 금지, 피해자 보호의 원칙과 반복적 출석요구의 금지, 심야·장시간 조사의 제한, 출국금지 남용의 제한을 법률로 명문화함(안 제198조제2항).

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비권력적·임의적 활동을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소 전 사실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그 신청 기반성·임의성과 결과물의 증거 사용 금지라는 한계를 명시함(안 제196조, 안 제197조의3제6항).

라. 보완수사요구는 그 대상과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도록 하고, 검사에게 요구 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행기한을 법정화 함과 동시에 통제된 연장 절차를 두고, 공소시효 임박·증거 멸실 위험 등에 대응하는 긴급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신설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에 대한 직무배제·교체·징계 요구와 보완수사할 수사관서의 지정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규정함(안 제197조의2).

마. 수사과정의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요구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와 진행상황 확인 신청권을 부여하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송치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금지함(안 제197조의3).

바. 수사기관 간 수사의 경합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수사권관할 조정협의회를 두고,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혐의에 대한 다른 수사기관에의 통보·이첩 의무를 신설함(안 제197조의4 및 제197조의5).

사.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주요 증거의 판단 내용과 법률적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며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정하고, 재수사요청에 관하여 90일의 요청기한과 서면주의, 3개월의 이행기한, 재요청과 불이행 시 직무배제·교체·징계 요구를 규정하는 한편, 수사과정의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 또는 직근 상급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5조의6부터 제245조의8까지).

아. 각 수사기관에 개방형 직위로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수사인권보호관을 두어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여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상시화함

(안 제245조의12 및 제245조의13).

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장을 신설하여 피해자·고소인·고발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의 주기적 통지의무, 피해자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 지연·수사미진 등에 대한 피해자등의 이의제기권,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검사 면담 신청 제도, 검사의 처분 전 피해자 의견 청취를 신설하여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안 제337조의2부터 제337조의6까지).

차. 피해자등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권,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참여와 의견진술, 구속 전 피의자신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 및 국선변호사 선정의 근거를 일반 규정으로 신설함(안 제337조의7부터 제337조의10까지).

카.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함(안 제246조의2).

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처리기한을 명문화함(안 제257조제1항).

파. 재정신청의 신청권자를 고소인 외에 고발인과 피해자로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90일로 연장하며, 국선변호사의 선정, 신청인·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기록 열람·등사, 기각 결정 시 구체적 판단 이유의 명시를 규정하고,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

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260조부터 안 제262조의5까지, 제262조의2 및 제262조의5).

하.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성폭력범죄등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도록 하고 신문사항의 사전 제출·검토 절차를 규정함(안 제337조의8).

거. 피해자가 증인신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양형에 반영하도록 하며,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실질화하고, 성폭력범죄등 사건의 심리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사생활에 관한 신문을 제한하며 신문사항의 사전 제출·검토 특례를 신설함(안 제337조의11, 안 제337조의12, 제337조의19 및 제337조의20).

너. 살인·상해·성폭력·강도 등 중대범죄의 피해자등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판절차에 참가하여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 증거신청, 공판기일 출석, 증인신문·피고인신문 및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등의 피고 사건 참가 제도를 신설하고, 증거조사의 순서·방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337조의13부터 제337조의19까지).

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해자의 피해 결과·회복 여부·처벌불원의사·양형 의견 등을 포함한 판결전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신체를 해치는 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96조의3).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됨.

이에 검사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송치된 사건의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보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 의견진술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소권 행사와 수사권 행사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7조의2 및 제25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피해자 소송참가제도 신설

가. 개정안 주요내용

박은정의원안 및 손술의원안은 살인, 상해,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절차에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①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 ② 증거신청, ③ 증인신문, ④ 피고인신문, ⑤ 의견진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소송참가제도를 신설하는 것임.

현 행	박은정의원안	손술의원안
<신 설>	제294조의6(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24장(살인의 죄)의 죄 중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 중 제257	제337조의13(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참가가 허가된 피해자등과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를 이 법에서 “피해자측참가인”이라 한다. 1. 「형법」 제2편 제24장(살인의

현행	박은정의원안	손솔의원안
	조부터 제259조까지, 제262조, 제2편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의 죄 중 제26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편 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 제2편 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죄 중 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5까지(제324조, 제324조의2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의 죄 중 제336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0조 제2항·제3항,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6조까지, 제340조 제1항, 제341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3. 제1호 및 제2호의 죄 중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에 참가하려는 피해자들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들의 주소지,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해자측참가인이 피해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때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 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및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의 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3. 제1호 및 제2호의 죄 중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에 참가하려는 피해자들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서의 부분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자들의 주소지,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피해자측참가인이 피해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때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현행	박은정의원안	손술의원안
	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 참가의 허가를 받은 피해자등(이하 “피해자측참가인”이라 한다)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때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참가인이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37조의9제3항·제4항 및 제337조의10을 각각 준용한다. ⑤ 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가림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37조의9제3항·제4항 및 제337조의10을 각각 준용한다. ⑤ 법원은 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피해자등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현행	박은정의원안	손솔의원안
	피해자등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신설>	제294조의7(피해자측참가인의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 열람·등사 신청)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266조의16은 피해자참가인(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37조의14(피해자측참가인의 검사 보관 서류등 열람·등사 신청) 제266조의3, 제266조의4 및 제266조의16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제294조의8(피해자측참가인의 증거 신청)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제291조의2, 제292조, 제292조의2 및 제296조는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4조의9(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 기일 출석 등)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측참가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제337조의15(피해자측참가인의 증거 신청)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제291조의2, 제292조, 제292조의2 및 제296조는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7조의16(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 기일 출석 등)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측참가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현행	박은정의원안	손솔의원안
<신설>	에는 심리 상황, 피해자측참가인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측참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측참가인의 좌석은 검사의 좌석측에 위치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마주 보고 위치한다.	에는 심리 상황, 피해자측참가인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측참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측참가인의 좌석은 검사의 좌석 측에 위치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마주보고 위치한다.
	제294조의10(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신청은 검사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해당 신문사항에 관하여 직접 신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하며, 검사의 신문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이외의 경우를 신문할 때에는 이	제337조의17(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신청은 검사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해당 신문사항에 관하여 직접 신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하며, 검사의 신문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이외의 사항을 신문할 때에는 이

현행	박은정의원안	손솔의원안
<신설>	를 제지할 수 있다. ⑤ 제16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4조의11(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피고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에 관하여는 제294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를 제지할 수 있다. ⑤ 제161조의2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37조의18(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피고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7조의1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제294조의12(피해자측참가인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에 한정하거나 검사의 권한 행사 및 양형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의 성질, 피해자측참가인의 연령과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2조에 따른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피해자측참가인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측참가인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제29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	제337조의19(피해자측참가인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에 한정하거나 검사의 권한 행사 및 양형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의 성질, 피해자측참가인의 연령과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2조에 따른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피해자측참가인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측참가인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

현행	박은정의원안	손술의원안
	은 검사에게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의견진술의 요지 이외의 사항을 진술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은 검사에게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참가인에게 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의견진술의 요지 이외의 사항을 진술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 피해자 참가신청 가능 범죄 >

구분	법률	해당 조문	내용
1호	형법 제2편 제24장(살인의 죄)	제250조, 제252조~제254조	살인, 존속살인, 촉탁·승낙살인, 자살관여 등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제259조, 제262조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폭행치사상 등
	형법 제2편 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형법 제2편 제31장(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제292조, 제294조 ※ 제291조·제292조의 미수 제외	미성년자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
	형법 제2편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제303조, 제305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형법 제2편 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24조의2~제324조의5 ※ 제324조 및 제324조의2 미수 제외	인질강요, 특수강요 등
	형법 제2편 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	제336조~제339조, 제340조 제2항·제3항, 제342조 ※ 제329조~제336조, 제340조 제1항, 제341조의 미수 제외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등

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5조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장애인 대상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특별범죄
----	------------------------	----------	---

나. 현행제도 개관

1)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지위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국가소추주의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당사자가 됨. 피헌행 형사소송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이하 ‘소송촉진법’)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제도(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와 같은 형태)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권·기록 열람·등사권·배상 명령 신청권 등 절차 참여적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2) 현행 제도상 피해자의 권리

가) 고소권(제223조)

피해자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를 할 수 있고, 친고죄의 경우 고소는 소송조건이 되며, 비친고죄의 경우 수사의 단서가 됨.

나) 재정신청권(제260조)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 피해자진술권(제294조의2)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진술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조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그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함.

라) 공판기록 등 열람·등사권(제294조의4, 제294조의5)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송기록 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음.

마)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제294조의6)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

바)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법 제25조)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다. 피해자참가제도 해외 입법례

<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가제도 비교1)>

구분	프랑스	독일	일본
기본이념	범죄피해자를 형사절차의 당사자로 인정	국가소추주의 유지 +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국가소추주의 유지 + 제한적 피해자 참여
대표제도	사인소추(Citation directe, Constitution de partie civile)	사인소추(Privatklage) + 부대소송(Nebenklage)	피해자참가제도(被害 者參加制度)
참가대상 범죄	대부분의 범죄(경죄·중죄 포함)	성범죄, 살인, 상해, 인신매매 등 중대범죄 중심	살인, 성범죄, 강도치사상, 체포·감금, 약취·유괴 등
참가방식	피해자가 직접 절차 개시 또는 검사의 공소에 참가	검사의 공소절차에 참가(부대소송)	검사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참가
피해자의 지위	소송당사자	독립된 소송참가인	제한적 소송참가인

프랑스는 범죄피해자에게 독립된 소송당사자 지위를 부여함. 사소제도 (partie civile) 「형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pénale)」제2조, 제85조, 제418조에 근거하여,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민사당사자의 지위로 참여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거나, 검사의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를 통해 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증거 제출,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폭넓은 절차 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²⁾.

1) 김태명. (2024). 프랑스·독일·일본에서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가제도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피해자학연구, 32(2), 92-102면을 바탕으로 구성

2) 김재희. (2025).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참여권과 국선변호사제도 검토. 피해자학연구, 33(2), 129면.

독일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 피해자는 보조기소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대공소제도를 통해 피해자를 소송당사자이자 소송주체로 인정하고 있음. 일신전속적인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부대공소제도의 대상임.³⁾ 부대공소 제도에서 공소참가인은 ① 공판기일출석권, ② 피고인, 증인, 감정인에 대한 질문권, ③ 재판장의 명령 및 개별 질문에 대한 이의제기권, ④ 증거신청권 및 증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상소권, ⑤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진술권, ⑥ 최종진술을 포함한 의견진술권, ⑦ 법관이나 감정인에 대한 기피권, ⑧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이상 형소법 제397조), ⑨ 상소권(형소법 제395조 제4항, 제401조 제1항제1문) 등 검사의 지위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⁴⁾.

일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의3을 통해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람을 사상시킨 범죄와 같이 몇 가지 특정 범죄⁵⁾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공판절차상 형사절차 참가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에 따르면, 피해자참가인은 ① 공판기일출석권(형소법 제316조의34), ② 검사의

3) ①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죄(형법 제174조 내지 제182조)의 피해자, ② 모살죄(형법 제211조) 및 고살죄(형법 제212조)의 미수범의 피해자, ③ 유기죄(형법 제221조), 상해죄·특수상해죄·학대죄·중상해죄(형법 제223조 내지 제226조) 및 공무원에 대한 상해죄(형법 제340조)의 피해자, ④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죄·노동착취목적의 인신매매죄·인신매매조장죄·인신강도죄·납치죄·미성년자 약취유인죄·아동거래죄, 스토킹죄(형법 제232조 내지 제238조, 자유박탈죄(형법 제239조 제3항), 인질강도죄(형법 제239a조), 인질강요죄(형법 제239b조) 및 특히 중한강요죄(형법 제240조 제4항)의 피해자, ⑤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위반죄(법원의 보호명령에 대한 위반)의 피해자, ⑥ 사인소추의 대상범죄에 속하는 영업보호와 관련된특허법 등 위반죄의 피해자이다. 여기에서 피해자는 대상범죄로 인하여 자신의 법익이 직접 침해당한 자, 즉 직접적인 피해자를 말한다. 친족이나 보험회사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4) 안지희. (2024). 성폭력 범죄 형사재판절차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 피해자 참가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젠더법학, 16(1), 99-100면.

5) 형법상 강제음란죄(제176조), 강간죄(제177조), 준강제음란 및 준강간죄(제17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제211조), 체포 및 감금죄(제220조), 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죄(제224조), 영리목적 등 약취 및 유괴죄(제225조), 몸값 요구목적의 약취 등 죄(제225조의2), 소재국의 이송목적 약취 및 유괴죄(제226조), 인신매매죄(제227조).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형사소송법 제316조의35), ③ 정상사실에 대한 증인신문권(동법 제316조의36), ④ 피고인에 대한 질문권(동법 제316조의37), ⑤ 사실 및 법률에 대한 의견진술권(동법 제316조의38)을 행사할 수 있음⁶⁾.

6) 안지희. (2024). 성폭력 범죄 형사재판절차에서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 피해자 참가 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젠더법학, 16(1), 100-101면.

라.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특정 사건 범죄피해자에게 소송참가를 법원의 허가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참여권을 보장하고, 공소유지에 관하여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며, 공정한 사법절차를 제고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형사소송절차에 범죄피해자의 소송절차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형사 재판의 특성,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보호,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개정안을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안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는 당사자주의를 기본 구조로 하고 직권주의적 요소를 보충적으로 규정⁷⁾하는데, 피해자에게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기본 구조와 조화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둘째, 두 개정안 모두 피해자측참가인의 증거신청권, 법관의 기피신청권(개정안 모두 피해자등의 권한으로 설정) 등 공판절차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부대항소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기소법정주의 및 일부 범죄에 대한 사인소추제도를 인정하는 독일의 형사사법시스템과 기소편의주의,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7)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결정,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6 판결, 정웅석 외 2인, 『신형 사소송법[제2판]』, 박영사(2023년), 45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시스템 간의 정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셋째,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소송행위와 피해자의 소송행위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즉 피해자측참가인의 권한 행사가 검사의 공소유지권과 충돌하는 경우(예: 검사가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등 검사와 피해자측참가인간의 관계설정이 필요함.

넷째, 개정안은 피해자측참가인의 ① 검사 보관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 ② 증거신청, ③ 증인신문, ④ 피고인신문, ⑤ 의견진술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바 각 절차별 소송참가(다수참가인이 있는 경우 등)로 공판절차가 지연될 것임이 자명한바 피고인이 구속사건된 사건 등의 경우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다수참가인의 경우 대표를 지정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피해자등의 권리 확대

가. 피해자등의 열람·등사권 확대

1) 개정안 주요내용

손솔의원안은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사람이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결정을 통지한 검사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등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해자등과 관련된 수사기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하되, 불허가 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258조에 제3항, 제337조의3 신설).

현행	손솔의원안
第258條(告訴人等에의 處分告知) ①・② (생략) ③ <신설>	第258條(告訴人等에의 處分告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결정을 통지한 검사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245조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략)	제337조의3(피해자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① 피해자등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피해자등과 관련된 수사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2) 현행제도 개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정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⁸⁾,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⁹⁾으로써, 피해자의

- 8)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9)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알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다만, 재판확정기록에는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무제한적인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열람·등사의 목적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접근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3)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다만, 사법경찰관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한 사건에 대해 열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⑦ 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등사를 허용할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열람·등사를 남용할 여지가 있고, 무죄추정을 받는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기타 피해자등 권한 확대

1) 개정안 주요내용

박은정의원안 및 손솔의원안은 기피신청권자에 피해자등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자등도 법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손솔의원안은 사경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기 전에 제출된 피해자등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

현행	박은정의원안	손솔의원안
第18條(忌避의 原因과 申請權者) ① 檢事 또는 被告人은 다음 境遇에 法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피고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경우에 법원의 기피를 신청할---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37조의21(피해자등의 기피신청권) 피해자등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법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5조의2(피해자 보호의 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

현행	박은정의원안	손술의원안
<신설>		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행 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7조의7(피해자 변호사의 선임 등) ① 피해자등은 형사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는 수사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 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통지는 피해자 변호사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

현행	박은정의원안	손술의원안
<신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연령, 장애,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⑥ 피해자 변호사의 선임·선정과 참여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7조의6(처분 전 피해자 의견 청취) ① 피해자등은 사건을 송치받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에게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 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현행제도 개관

기피(忌避)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제도로, 제척, 회피와 함께 법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임.

현행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만을 기피신청권자로 규정¹⁰⁾하고 있음.

10)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때

②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의 원인은 ① 법관이 피해자인 때, ② 법관이 피고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때(제1항), ③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제2항)로, 제1항의 사유는 객관적·형식적 사유로서 그 존재가 명백하면 기피가 인정되며, 제2항의 사유는 주관적·실질적 사유로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됨.

3)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피해자등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피해자에게 법관 기피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는 구조라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기피신청권을 각 행사하는 경우 소송 지연 등의 우려가 있는 점등에서 기피신청권자에 피해자등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손술의원안 제195조의2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5조¹¹⁾의 내용을 상향입법한 것으로 사건의 피해자 보호 의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11) 제15조(피해자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셋째, 처분 전 피해자 의견 청취 규정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에 대한 피해자의 실질적 관여를 보장하는 취지이나, 의견 제출의 효력과 검사의 고려 의무의 구체적 내용 및 불이행 시 제재 수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성폭력범죄등 피해자보호 확대

가. 개정안 주요내용

손술의원안은 성폭력범죄 사건 심리 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사생활 등 유무죄와 무관한 인격권 침해 신문을 제한하고, 19세 미만, 장애인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경우 공판준비절차 부의를 의무화하며, 피고인 측의 신문사항 사전 제출 및 재판장의 사전 검토·제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는 답변 거부권과 질문 제한 요청권을 보장하는 것임.

현행	손술의원안
第299條(不必要한 辯論等の 制限) (생략)	第299條(不必要한 辯論等の 制限)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재판장은 성폭력범죄등(제337조의8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정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 평판,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신문 또는 진술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제337조의8(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손술의원안
<신설>	공판준비절차) ①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폭력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공판준비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3. 그 밖에 재판장이 2차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재판장은 제1항의 공판준비기일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 변호사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항의 공판준비기일 전에 피해자에 대한 신문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문사항에 관하여 진술조력인 및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신문사항·신문방법·신문순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7조의20(성폭력범죄등 피해자 신문에 관한 특례)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성폭력범죄등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전에 미리 재판장에게 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현행	손술의원안
	신문사항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재판장이 제한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문사항 및 답변은 증거로 할 수 없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때 2. 피해자의 성적 이력과 관련한 정보가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문사항에 대한 증거조사 및 진술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피해자는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에게 이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제29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에게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현행제도 개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는 법원이 19세미만 피해자등¹²⁾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고,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음.

12)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

다.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피해자의 성적 이력 등에 관한 신문 제한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및 반대신문권과의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피해자의 성범죄피의 사건의 경우 성적 이력, 평판, 사생활 등이 피고인의 무죄 또는 형의 감면 사유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인 경우가 다수이고 유무죄 입증과 무관한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유무죄 입증과 무관한 신문 또는 진술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과 같은 성범죄피해자등에 대한 공판준비절차 부의제도는 성폭력처벌법상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통해서 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있고 이를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4. 기소전 사실확인 및 검사에 대한 의견 진술

가. 개정안 주요내용

손솔의원안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기소 전 사실확인¹³⁾을 할 수 있도록 하나, 검사는 이를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소환할 수 없도록 함. 김승원의 원안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 및 보고요구 할 수 있도록 함.

두 개정안 모두 일정한 경우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등 또는 피의자는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는 면담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소환할 수 없고, ‘기소 전 사실확인 결과를 기재한 서면(손솔의원안)’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김승원의원안)’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함.

현 행	김승원의원안	손솔의원안
<신 설>	제254조의2(검사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6조(기소 전 사실확인)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개된 자료, 판결문, 전문 학술자료 등의 검색·확인·검토 2.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취소, 반

13) ① 공개된 자료·판결문·전문 학술자료 등의 검색·확인·검토, ② 소송조건에 관한 서면 또는 진술의 접수·확인, ③ 사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령, ④ 면담에서의 진술 청취

현	행	김승원의원안	손술의원안
			<u>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등 소송조건에 관한 서면 또는 진술의 접수·확인</u> 3. <u>사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령</u> 4. <u>제337조의5에 따른 면답에서의 진술 청취</u> ② <u>제1항의 행위는 사건관계인의 신청 또는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야 하며, 검사는 이를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소환할 수 없다.</u> ③ <u>검사가 제1항의 행위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은 공소제기 여부의 판단 및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위한 내부 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u>
<u><신 설></u>		<u>제247조의2(검사에 대한 의견진술)</u> ① <u>이 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하 “의견진술인”이라 한다)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진술을 위한 면답(이하 “의견진술을 위한 면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1. <u>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u>	<u>제337조의5(검사에 대한 면답 신청)</u> ① <u>고소인, 고발인, 피해자등 또는 피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에게 면답을 신청하여 직접 진술할 수 있다.</u> 1. <u>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그 요지를 진술하려는 경우</u> 2. <u>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가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또는 변론을 하려는 경우</u> 3. <u>그 밖에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려는 경우</u>

현	행	김승원의원안	손술의원안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 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피의자의 변호인 3.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대리인 ② 검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통지에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의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의견진술인의 신청에 따라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직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인에게 변경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견진술인은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 시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의견진술인이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에서 사건에 관련한 물건에 대한 제출 의사를 밝히고 그에 대하여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물건에 관한 압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의견진술을 위한 면담이 종료한 후 그 일시, 장소, 대상자 및 의견진술의 요지 등을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직접 대면하여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검사는 이 조에 따른 면담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출석을 강제하거나 직권으로 소환할 수 없다. ④ 면담의 신청·실시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개정 배경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¹⁴⁾는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확인의 절차적 근거가 불명확해짐. 그에 따라 검사의 사실확인의 절차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김승원의원안은 “검사의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안 제254조의2),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안 제247조의2)” 규정을 신설하고, 손솔의원안은 “기소 전 사실확인(안 제196조), 검사에 대한 면담 신청(안 제337조의5)” 규정을 각 신설하고 있음.

다.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수사·기소 분리 체계 하에서 검사의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 심사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두 개정안 모두 ‘의견진술인면담결과서’·‘기소 전 사실확인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4)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면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사건관계인의 진술의 일관성 등을 탄핵할 수 있는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두 개정안 모두 검사에 대한 면담 신청 제도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 등이 신청하도록 할 뿐 검사에 의한 사건관계인의 면담신청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함. 피의자 등이 검사와의 면담을 거부하게 되면 검사는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의 절차로 이행해야 할 수 밖에 없는 등 수사지연 사유로 작용될 여지가 있고 기소 전 사실확인 절차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 조사

가. 개정안 주요내용

손술의원안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양형관계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6조의3 신설).

현 행	손술의원안
<신 설>	제296조의3(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적 발달과정, 성장 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대한 사항 및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피해자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힌 범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범죄 ③ 제1항·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른 판결전조사 결과 중 피해자등에 관한 사항은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	--

나. 현행제도 개관

현행 「법원조직법」 제54조의3¹⁵⁾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양형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 조항 등에 근거하여,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있음¹⁶⁾.

또한,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¹⁷⁾은 법원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양형조건에 관한 조사와 그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¹⁸⁾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의뢰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15) 제54조의3(조사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의 자격, 직제 및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6) 정웅석 외 2인,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2023년), 36면

17) 제272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8)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양형의 합리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판결전조사 제도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판결전조사 기간 동안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사 기간의 상한 및 조사 지연 시 처리 방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판결전조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보호관찰소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인력·예산에 관한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3